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전략과 한국정부의 대응방안

윤권순, 임근영, 정성창

1. 서 론

한국 지재권 법률 강화 및 집행의 역사를 보면 국제 경제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압력이 국내적 필요에 의한 자생적 보호 강화 요구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진국들 중에서도 미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지재권의 국제적 보호 강화에 앞장 서 왔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이 전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WTO/TRIPs 협정체결과정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 초부터 무역법 301조를 무기로 하여 쌍무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통해 공세적인 지식재산권 협상을 전개해 왔다.

미국 정부는 외국 시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미국 지재권 소유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국제 지재권 보호를 용호하는 가장 공격적인 정부라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미국과 정치적, 경제적으로 특수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한국은 그러한 거센 바람을 온몸으로 맞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겠다. 한국은 그 동안 미국의 공세적인 지식재산권 협상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는 일정 부분 미국이 가지는 광대한 시장과 첨단기술로 인한 기본적인 협상력의 차이에서 비롯

된 것으로 보여지지만, 치밀한 대응을 했다면 좀더 나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사실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겠다. 이는 특히 불질특허 도입 및 미시판불질에 대한 소급적 특허 보호를 허여한 1986년 한미 지재권 양해각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본 보고서는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목표, 협상사례 등을 통해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 메커니즘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방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대미 지식재산권 협상에 있어서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지재권을 둘러싼 국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적 체제 정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전략을 분석하여 우리 정부의 대응방안을 도출해 냈으므로써 정부의 대외 지재권 협상력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연구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정책을 담당하는 한국과 미국의 실무진의 면담을 통해 실증적인 연구가 되도록 하였다. 동 보고서가 향후 미국과의 지식재산권 협정과정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식사회에 적합한 국내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 및 조정 메커니즘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수립은 단지 행정부의 몇 개 부처만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미 정부의 구성요소인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망라하여 모두 관련되어 있으며, 이익단체 및 비정부기구(NGO)의 민간단체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의 경우 지식재산권 정책과 관련하여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동 기관간의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조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식재산권 정책이 국내적인 문제나, 대외적인 문제나에 따라서 주도하는 정부 부처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법률에 대한 문제인지, 집행에 대한 문제인지에 따라서도 각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진다고 하겠다. 즉, 먼저 지재권의 법률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국내외적인 조정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단연코 미 특허상표청(USPTO 혹은 PTO)이다. 미국의 특허상표청은 특허 및 상표뿐만 아니라 저작권 정책까지 담당하고 있다. 비록 미국 의회 산하의 저작권청이 저작권 정책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저작권청은 입법부 산하의 기관이고 특허상표청은 행정부내에서 지식재산권을 총괄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 점에서 정책 결정에 더 영향력이 크며, 지식재산권의 실체 법적인 측면에서는 특허상표청이 전담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가 특허청, 문광부, 정통부 등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한국에 비해서 미국의 조정 기능이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재권의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미 특허상표청이 국내외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재권이 무역과 연계될 때는 미무역대표부

(USTR)가 절대적인 결정권을 쥐고 있다. 미국 무역법에 의해서 주어진 강력한 권한으로 USTR은 미국내 지재권 관련 모든 요소의 의견을 수렴 및 조정하여 지재권 관련 쌍무 및 다자간 협상에 있어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있다. 즉, 무역관련 지재권 협상의 경우에는 USTR이 주무부처이고 PTO는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법무부, FBI는 미국내 지재권 집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지재권 관련 물품의 국경간 이동의 규제에 있어서는 관세청이 책임지고 있다.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의 집행에 있어서는 국무부가 산업계와 공조를 이루어 각국의 집행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취합하여 각국에 대한 집행 사항을 총괄 평가하여 실력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USTR이 담당하고 있다.

둘째, 미국의 지식재산권 정책 및 집행의 조정 활동에 있어서 정부간 혹은 정부와 사적분야간에 지속적인 인적 교류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부처의 지식재산권 관련 담당자들이 한곳에 오래 근무함으로써 수시로 협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협의체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으로 지식재산권 정책이 실무자선에서 긴밀히 협의되고 있다. 또한 USTR 지재권 담당자가 USITC로 옮기거나, 미 국무부에서 USTR로 지원해서 가거나 혹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저작권청으로 들어오는 등의 인력이동도 이를 기관간의 상시적인 협력에 도움을 주고 있다.

3.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메커니즘

(1)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목표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의 궁극적인 목표는 미국의 “국가전략”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필요가 있고, 이는 미국의 “국익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시대와 미국사회의 현실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전략은 항상 변화한다고 하겠다. 즉 지식재산권의 협상목표는 국가이익의 추구라는 국가전략과 독립해서 파악할 수는 없고 항상 연계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자국의 경쟁력 있는 산업이 첨단기술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국내법을 정비하여 첨단기술에 대한 보호 대상을 넓히고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타국에까지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적인 미국 지식재산권의 협상목표는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 산업분야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함이다. 즉 USTR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미국 산업 분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역법 301조를 시행하였고, 따라서 국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보호주의의 요청을 무마시키고 GATT 내에서의 다자간 외교 목표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스페셜 301조 지재권 정책도 세 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미국 산업 분야—의약품, 정밀화학, 영화, 음반,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이익을 위해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산업 그룹은 지재권 보호를 위한 USTR의 외교 의제를 형성하고 있다. USTR의 스페셜 301조에서 등급이 지정된 국가들의 명단은 저작권 및 특허 이해그룹의 목표 대상과 일반적으로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계의 청원을 보면 1990년대 후반의 지재권 외교의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한편, 미국의 협상목표는 1995년 이전까지는 지식재산권법을 미국수준으로 강화시켜 각국이 입법화하도록 하는 것에 치중해 왔고, 그 이후에는 지식재산권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재산권 집행”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WTO/TRIPs 협상의 타결로 인해 지

식재산권 실체법에 대한 정비가 WTO 가입국의 의무사항에 됨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미국 국내적으로 “국가지식재산권법집행조정위원회”가 설립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집행과 관련한 법제도 및 집행절차 등에 대한 압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2000년 국가지식재산권법조정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밝혀졌듯이 미국 지재권 관련 행정부처는 지재권 집행에 대한 국내외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2)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가

미국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참여자는 대부분 변호사 출신으로 전문적인 지식과 협상능력을 가지고 있고 한 기관 기관에 장기간 근무함으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으로 인해 타국에 비해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담당 공무원들은 주로 법대(law school) 및 경영대학원(business school)에 수학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법대(law school)의 특징은 협상프로그램(negotiation program) 운영하여 협상 기술을 익힐 수 있는 커리큘럼이 포함되어 있고, 중립적 중재를 할 수 있는 중재자(mediator) 자격증을 수여하고 있다. 특히 법대(law school) 수학 과정에서 계속되는 논쟁 및 발표를 통해 협상 환경에 익숙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창의력과 발표력을 중시하는 사회 교육 시스템 속에서 전문적 지식과 세련된 협상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지재권 협상가들이 한국의 협상가들보다 우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도 이러한 현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1998년 정부조직개편시에 외교통상부

내의 통상법률지원팀을 신설하여 미국 법대(law school)를 나온 변호사를 배치하여 외교통상부의 통상협상력을 강화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 실효성이 의문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같은 해(1998년)에 법무부내에 국제통상법률지원단을 설립하여 정부 부처의 통상현안에 대한 법률자문과 통상협상, 통상마찰에 대응하는 법적 논리 개발 등 정부내 변호사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로펌의 통상전문변호사, 통상법 전공교수, 경제단체 통상실무전문가, 각 기업체 법률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국제통상법률자문단은 국제통상법률 지원단에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와 같이 일정한 기간동안 한곳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부서로 옮겨서 다른 일을 하게 되는 순환보직이 아니다. 순환보직이 이루어지는 곳은 유일하게 국무부이며 다른 모든 부처는 부처뿐만 아니라 같은 기관내에서도 부서나 보직을 옮기기 위해서는 원하는 부서의 자리가 있을 경우에 현재의 직위를 사임하고 다시 지원해야 한다.

(3)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무기

미국이 지식재산권 협상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무기는 크게 위협(stick), 회유(carrot), 설득 세 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즉, 스페셜 301조 등급 지정과 일반관세특혜제도(GSP)의 자격 철회 등은 위협에 해당되며, GSP 자격 제공 및 과학기술협정 체결 등과 같은 경제적인 대가를 제공하는 것은 회유책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효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해당 국가 내에서 자생적인 보호 필요성을 일깨워 주려는 노력은 설득

작업으로 구분된다. 미국 협상가들은 자신들의 협상 상대국이 광범위한 지재권 보호를 채택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점에서 스페셜 301조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는 위협의 전략에 한계를 깨닫고 설득의 전략을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구사하고 있다. 즉, 강력한 지재권 보호가 보호를 꺼려하는 국가의 국내 경제에 순수 이득이 될 것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미국 지재권 협상가들은 협상 테이블에서 이용할 수 있는 수치적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는 주로 민간단체에서 제공하거나 필요하다면 USITC와 같은 미국내 정부기관에 요청하여 얻기도 한다.

그 예로서 이미 앞에서 지적된 바가 있는 1985년 IIPA가 USTR에 제출한 “미국 정부의 무역정책: 저작권 산업의 견해”라는 백서와, 「10개 선별국에서의 미국 저작물 불법복제행위 실태」라는 보고서가 있었다.

USTR은 1989년 첫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특히 싱가폴에서의 개선된 집행 노력으로 인하여 1985년에 조사되었던 10개국에서의 불법 복제 손실액이 6억4천5백만 달러로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IIPA는 USTR을 위하여 매년 저작권 정책과 불법복제 비율에 관한 엄청난 분량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의한 피해 현황과 지재권 경제 보호에 의한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인하여 지재권 정책 담당자 및 협상가는 지재권의 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며, 지식재산권 협상시 동 데이터를 유력한 자료로서 활용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협상 무기를 가지고 해당

협상국을 상대할 자에 대한 결정 등 전체 협상의 방향을 잡게 되는 것이다.

(4)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

1970년대 양대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와 더불어 기존 미국의 주요 산업이었던 제조업 등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던 미국은 산업 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겪게 되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국내외 정책 또한 전례 없이 그 중요성을 더해가게 되었다.

즉, 지식재산권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보호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움직임은 국내적으로 1982년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설립, 반독점법의 약화, 공공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로 구체적으로 나타났고, 대외적으로는 미국 무역법을 1984년 1988년 개정하여 지재권 보호 요건을 강화하였을 뿐더러 GATT/UR에 지식재산권 의제 상정에 성공하는 등의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적극적인 연계로 이어졌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1990년대에 들어서 더욱 강화되어 생명공학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이에 대한 특허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와 더불어 미국 특허상표청의 위상도 강화되었다. 대외적으로 무역과 지식재산권의 연계는 WTO/TRIPs 협정의 체결을 가져왔고, 미국은 쌍무협상뿐만 아니라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최대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이에 미국의 지식재산권 전략은 국내정책과 대외정책으로 대별하여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정책은 미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첨단

산업과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하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자?정보 기술(IT)분야와 생명공학(BT) 분야에서의 특허 대상이 넓어지는 특허법개정이 이루어져왔다. 또한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확산을 위해 연구기관에게 특허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또한 특정한 특허가 미국의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된 경우 특허정의 행정력을 이용하여 이를 특허를 무효로 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 전략은 세계시장의 통합에 밸맞추어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를 국제적 통일규칙으로 인정시키려는데 핵심이 있다. 대외정책의 경우 큰 흐름은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는 첨단지식 산업에 대해 타국에서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도록 법제화하고, 이를 강력히 집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쌍무협상과 다자간 협상을 활용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미국 쌍무협상이나 다자간협상 등을 활용하려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무역법 301조 등 여러 가지 수단을 강구하여 활용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움직임은 1980년대 들어와서 본격화되었고, 1984년 및 1988년에 개정된 무역법 301조가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였다. GATT/UR 다자간 협상이 1986년에 출범하였는데, 브라질 등 개도국들은 GATT 체제 내에서 지식재산권 문제를 다루는데 강력히 반대하였다. 미국은 한국을 지식재산권 협상의 주목표로 설정하여, 1985년 무역법 301조에 의한 조사권을 발동하는 등 유래가 없을 정도로 공격적인 협상을 전개하여 1986년 타결되었다.

미국의 전략은 한국을 개발도상국으로부터 분리시키고, 무역법 301조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들 국가들을 위축시켜, 다자간 협상을 출범시키는 것 이었는데, 미국은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두게 되

었다.

한편, 효과적인 지재권 보호의 결여를 이유로 한 무역법 301조의 사용을 의회에 도입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으나, USTR이 이를 이행하는 것은 좀 더 어려운 정책변화였다. 그 이유는 1984년에 USTR은 지재권에 대해서 거의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앞에서 지적하였다시피 USTR은 지재권 전문 변호사를 미무역부대표보(Deputy Assistant USTR)로 영입하여 USTR의 지재권 정책에 대해서 투자 담당 미무역 대표보(Assistant USTR)를 보좌하게 하였던 것이다.

미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을 4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미국 국내법(무역법 301조, 관세법 337조 등)을 정비 및 강화하여 불공정한 수단으로 제조된 외국제품의 유입을 차별적으로 취급하고(관세법 337조), 이러한 지재권 보호에 대한 부적절하고 불공정한 관행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보복조치를 갖추는 전략이다(I).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쌍무협상으로 미국내의 룰의 공정성을 주장하여 미국내의 질서 및 법률을 상호주의의 이름으로 타국에게 강요하여 통상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II). 셋째로, 미국이 어떤 조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어 현행의 국제질서나 조약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새로운 국제 규칙의 설정을 제안하여 구체화하는 전략으로 미국 주도하에 GATT/UR의 제에 지재권을 상정하여 국제 무역체계에 지식재산권을 편입시킨 것이 그 예이다(III). 마지막으로 미국이 상대국의 법제도나 관행을 강화된 국제질서에 따르도록 행동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략으로, 강화된 국제경제질서에 있어서 기존의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교묘한 전략이다(IV). 그리고 앞에서 여러번 언급되었듯이 이러한 미국 정부의 협상 전략의 배후에는 늘 미국 산업계

의 지식재산권 전략이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협상의 방식은 다자간 협상과 쌍무협상으로 나눌 수 있다. 다자간 협상을 응호하는 진영은 많은 국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무역 협정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주장하고, 쌍무간 진영은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와의 협정을 형성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어느 협상이든지간에, 강화된 지재권 보호와 가속화된 경제 발전과의 연계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나타날 때 협상 상대자가 자발적으로 폭넓은 지재권 보호를 선택하게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자간 협상기관으로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무역에 관한 지식재산권 협정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있다. 그리고 쌍무간 협상국은 한국, 태국 등과 같은 신흥산업국(NICs)과,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는 저개발국가(LDCs), 그리고 일본과 같은 선진국으로 구분할 수 있다.

4.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메커니즘

(1) 개 요

한국에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상에 대한 개념이 처음으로 정부 및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한 계기가 된 것은 지난 불질특허 도입 등을 위한 1986년 한미지재권양해각서의 체결 전후에 있었던 한미간의 협상이었다. 그 이후에 불질특허 도입이라는 같은 의제에 대한 한일, 한-EC간의 지재권 쌍무협상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지재권 쌍무협상은 한미간 자유무역협정 및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내의 지재권 부분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이 지재권의 다자간협상에 본격적으로 임하게 된 것은 1986년부터 1993년 말까지 GATT/UR의 지재권 협상에서 한국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WTO/TRIPs 협정 이행 의무가 발생하는 2000년에는 WTO/TRIPs 지식재산권 법령 검토회의가 활발히 전개되었다. 또한 2001년 11월에는 카르도하에서는 WTO 뉴라운드 출범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이슈가 협상 테이블에 놓여지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준비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에 포함되는 개별 권리들은 각각 특별법으로 보호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관광하는 기관도 다르다.

1946년 특허법의 제정에서 1992년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이르기까지 지식재산법에 포함되는 많은 법률이 만들 어졌지만 이들의 상당부분, 특히 새로이 나타난 지식재산에 관련된 법률은 대부분 당해 산업을 육성하는 부처의 발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므로 법이 제정된 후에도 “내 법”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관리되어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 점은 당해 산업의 육성이라는 점에서는 바람직할지 모르나 산업별로 지식재산이 보호·관리되다 보면 불필요하게 업무가 중복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라는 전제적인 관점에서 부조화가 발생하기 쉽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호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협상은 기본적으로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특허청,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등)에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

고, 그 의견을 통상교섭본부에서 수합하여 협상에 임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지식재산권 쟁의 협상은 외교통상부의 북미통상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WTO/TRIPs와 관련해서는 세계무역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를 부서는 지식재산권 통상 및 기타 업무를 겸해서 수행하고 있다.

부처간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조정위원회는 2001년 현재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대미 협상 및 WTO/TRIPs 협정 체결 후 한국의 지재권 보호 수준이 높아져서 우리나라가 PFC에 지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지식재산권 담당자 중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국내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증진하고 그 보호를 강화하는 노력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협상을 일선에서 임하고 있는 정부를 보좌하는 국내 지식재산권 관련 정부 산하기관 및 민간단체가 국내에서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비교해서 민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나 정보교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미국이 한미 협상을 준비하면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의 자료를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지재권 민간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지재권 협상을 위한 정보 제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하겠다.

그나마 저작권과 컴퓨터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정부부처인 문광부 저작권과와 정통부가 각각의 산하기관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와 프로그램심

의조정위원회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하여 근무기간이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 공무원 순환보직제로 인한 전문성 부족을 채워주어 지재권 관련 쟁점 및 다자간 협상에서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특허청과 그 산하연구기관인 지식재산권연구센터의 관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지난 2000년 6월 26~3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TRIPs 국내법령 이행 검토회의에는 지재권 법령관련 부처의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이 자문으로 참석하였는데 이는 보강 및 협력의 역할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는 정부 부처와 산하의 연구기관과 만의 수직적인 연계에서 벗어나서 지재권 관련 부처간의 그리고 그 산하 연구기관과의 수평적인 유기적인 관계의 정립 및 유지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2) 한미 지식재산권 협상

지재권에 관한 한미 쟁점협상의 역사는 1976년 한미통상장관회의에서 미 정부가 한국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지재권 보호 문제가 한미 양국간에 있어서 마찰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은 미국 정부가 국내적으로 경제력 약화로 인한 위기감이 감돌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를 찾던 시기와 일치한다.

이미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한국은 미국의 공세에 밀려 지재권 보호 강화를 하게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재권 협상을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거나 한국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대표로 나오는 미국의 기관은 USTR를 위시하여 미 특허상표청(USPTO), 미저작권청,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 등이다. 이 중에서 협상 내용에 대한 조

정은 USTR이 담당하고 있으며, 미 대표단이 한국에 방문했을 경우에 주한 미국 대사관의 경제 담당자들도 참석하여 미 대표단에게 한국 현지 사정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한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은 USTR로부터 지재권 관련 한미간 협의 안건을 통보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을 지재권 담당 부처로 내려보낸 후 의견 수렴 및 조율을 한다. 이때 의견 수렴의 방법으로는 관계 부처의 담당자들과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또한 서면으로도 각 부처의 입장을 전해 받을 수 있다.

무역관련 한미 지재권 협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미 통상실무회담으로서 양국 정부간 실무협의로선 가장 고위급의 협상 채널로 외무부 통상국장을 수석 대표로 관련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하며, 매년 상, 하반기에 한차례씩 여는 것을 원칙이나 경우에 따라 수시로 열리고 있다.

그리고 한미통상장관회담과 한미경제협력대화에서도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의제가 늘 언급되고 있다.

한미간의 지식재산권 관련 협상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물질특허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 시작한 1980년대 초반부터 결국 이를 허용한 1986년 한미지재권 양해각서의 체결까지로서, 물질특허 도입을 위한 특허법 개정, 미국 저작물의 소급 보호를 허용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정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의 지식재산권법의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제2기는 1988년 8월 종합무역법 제정 이후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주요 관심사가 집중된 기간을 들 수 있다. 놓기 간 이후 현재까지 불법복제등

지식재산권의 실질적인 보호라는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며, 동 경향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5.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대응방안

(1)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환경의 변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의 공세는 1993년 말 WTO/TRIPs 협정이 체결됨으로써 그 결실을 맺게 되었다. 개도국에게 유예기간이 부여되기는 했지만 동 협정의 체결로 해서, 전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실체법적인 측면의 통일화가 이루어졌다.

TRIPs 협정은 95년부터 발효되어 현재까지 비교적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국가간 이해관계의 변동과 생명공학, 전자상거래 등 기술발전의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측면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선, 기술발달의 영향으로 인터넷이 등장함에 따라, 인터넷상 특허권 침해의 문제와 상표사용의 문제, 인터넷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 국경을 초월하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기인하는 재판관할권의 문제 등 기존 권리관계의 해석과 집행에 좀더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고, 생명공학 등 기술발전에 따라 인간 유전자에 대한 특허허여를 윤리적인 측면에서 경계하는 시각도 등장하게 되었다.

- 또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통지식, 유전자등 새로운 분야의 신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TRIPs 협정내 설정되어 있는 기존 지재권제도와의 조화 문제 등이 제기되게 되었다.

한편, WIPO는 특허, 상표, 정보기술등 분야별 상설위원회를 통해 국가간 지재권제도의 통일

화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터넷상 표지보호를 위한 규범마련, PCT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기간의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혁이슈의 타결이 그 예이다. 2001년 4월 제1차 정부간 위원회개최를 통한 유전자원(genetic resources) 및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민간전승불표현(expressions of folklore)의 보호를 위한 지재권의 새로운 역할의 모색이 시작되었으며 인터넷도메인네임과 상표권외의 표장과의 충돌에 관한 해결방안마련을 위한 제2차 프로세스 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한국은 그 동안 지식재산권 보호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특정한 기술, 예컨대 IT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경우도 나타나게 됨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게 되고 있다. 즉 한국이 우위를 점하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를 보호하는 법제도를 정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인식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 상품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보호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리고 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비한 의제들은 복잡하고 난해하여, 경우에 따라 국가경제와 산업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협상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치밀한 논리개발과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한 거시적 협상전략의 수립과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2) 한국 정부의 대응방안

미국의 경우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식재산권 정책의 중심이 실체법적인 측면에서 집행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

의 지재권 관련 통상협상은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초점이 맞추어 질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지식재산권 집행제도에 대한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제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함과 동시에, 국내의 지식재산권 집행에 대한 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미국이 그 동안 쌍무협상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해온 스페셜 301조에 의한 통상 압력은 WTO/TRIPs 협상의 타결로 인해, 그 효용성이 많이 약화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WTO 타결 이후로 미국이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된 나라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불합리한 요구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WTO에 제소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중·장기적인 정부의 지식재산권 협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정부의 지재권 협상력 강화 방안〉

특허청을 지식재산권 전체를 포괄하는 부서로 개편

- 저작권 담당직 신설

- 특허관련 정책담당자 특채

(1명, 순환 보직 인함)

- 지식재산권 정책 전체에 대한 정보 축적

정부부처간 산업계간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 지식재산권 정책 포럼 운영

- 산업계와의 정보교류 활성화

각 부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 통상교섭본부내 지적재산 전담부서 설치

- 장기근무

- 체계적 교육

협상관련 정보의 축적 및 체계적 전달

- 지식재산권연구센터등 관련 연구소들 간의 정보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식재산권 관련 연구 활성화

- 경제적 분석

- 산업정책

개도국의 지재권 침해 대응방안 마련

- 해외공관의 기업의 지재권 보호 지원 기능 강화

〈지적재산권 연구센터 제공〉

발행 2002/4

